투자설명서 변경 대비표

칸서스자산운용㈜

1. 투자신탁의 명칭

- 칸서스 뫼비우스 블루칩 증권투자신탁 1 호(주식)

2. 효력발생일

- 2016.03.02

3. 변경사유

- 집합투자기구 결산으로 인한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운용전문인력, 보수 및 비용,재무정보,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운용실적,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등 통계자료 갱신
- 과세 및 관련법령에 관한 개정사항의 반영

4. 투자설명서 변경 내용

<table>
<tr><th>항 목</th><th>정 정 전</th><th>정 정 후</th></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td><td>2015.01.04기준</td><td>2016.01.04기준</td></tr>
<tr><td>5.투자운용인력
가.운용전문인력</td><td>2015.01.04 기준</td><td>2016.01.04 기준</td></tr>
<tr><td>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td><td>
<table>
<tr><td rowspan="2">구분</td><td colspan="3">지급비율(연간, %)</td></tr>
<tr><td>C1 클래스</td><td>C2 클래스</td><td>A1 클래스</td></tr>
<tr><td>집합투자업자 보수</td><td colspan="3">연 0.71%</td></tr>
<tr><td>판매회사 보수</td><td>연 1.00%</td><td>연 1.00%</td><td>없음</td></tr>
<tr><td>신탁업자</td><td colspan="3">연 0.034%</td></tr>
</table>
</td><td>
<table>
<tr><td rowspan="2">구분</td><td colspan="3">지급비율(연간, %)</td></tr>
<tr><td>C1 클래스</td><td>C2 클래스</td><td>A1 클래스</td></tr>
<tr><td>집합투자업자 보수</td><td colspan="3">연 0.71%</td></tr>
<tr><td>판매회사 보수</td><td>연 1.00%</td><td>연 1.00%</td><td>없음</td></tr>
<tr><td>신탁업자</td><td colspan="3">연 0.034%</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
<td></td>
<td>
<table>
<tr><td>보수</td><td colspan="3"></td></tr>
<tr><td>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td><td colspan="3">연 0.016%</td></tr>
<tr><td>기타비용</td><td colspan="3">연 0.003 %</td></tr>
<tr><td>총보수·비용</td><td>연 1.763%</td><td>연 1.763%</td><td>연 0.763%</td></tr>
<tr><td>증권거래비용</td><td>연 0.786%</td><td>연 0.793%</td><td>-</td></tr>
</table>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2015.01.04 기준으로 최근 1 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비용은 2015.01.04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td>
<td>
<table>
<tr><td>보수</td><td colspan="3"></td></tr>
<tr><td>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td><td colspan="3">연 0.016%</td></tr>
<tr><td>기타비용</td><td colspan="3">연 0.003 %</td></tr>
<tr><td>총보수·비용</td><td>연 1.763%</td><td>연 1.763%</td><td>연 0.763%</td></tr>
<tr><td>증권거래비용</td><td>연 0.482%</td><td>연 0.474%</td><td>-</td></tr>
</table>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2016.01.04 기준으로 최근 1 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비용은 2016.01.04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td>
</tr>
<tr>
<td>14. 이익 분배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td>
<td>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td>
<td>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td>
</tr>
</table>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요약재무정보	2015.01.04 기준	2016.01.04 기준
2.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2015.01.04 기준	2016.01.04 기준
3.집합투자기구의운용실적	2015.01.04 기준	2016.01.04 기준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2015.01.04 기준	2016.01.04 기준
다. 최근 2개 사업연도요약재무내용	2015.01.04 기준	2016.01.04 기준
라. 운용자산 규모	2015.01.04 기준	2016.01.04 기준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과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